



경기도의회 제391회 (정례회)

제3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 장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769번)

2026. 6. 23.(화)

여 성 가 족 평 생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창희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장민수 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6. 6. 1.
3. 회부연월일 : 2026. 6.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 경기도 및 시·군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청년·청소년 지원사업의 신청·접수·선발·사후관리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온라인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민원사무 처리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청년·청소년 정책사업의 신청·접수·선발·사후관리 지원을 위한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관련 민원사무 처리 근거를 신설함(안 제4 조제11호 및 제12호).
- 나.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사용 허가 신청 등에 관한 서식을 신설함 (안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

III. 절차 이행 여부

1. 입법예고 및 집행부 협의 결과

가. 입법예고(2026. 5. 30. ~ 6. 4.) : 의견 없음

나. 집행부 협의

- 미래평생교육국 청년기획과 : 의견 반영(청년기획과-6212, 2026. 5. 27.)

2. 비용추계

○ 추정 금액 : 530백만원¹⁾

- 안 제4조제11호에 따른 청년·청소년 정책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 중인 「경기도미래세대재단 통합플랫폼 구축 및 운영 관리」 사업과 연계하여 향후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유지관리비 수준으로 한정하여 비용을 추산함.

(단위:백만원)

구 분	합 계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통합정보시스템(경기청년포털) 유지 관리비	530	106	106	106	106	106

IV. 검토의견

1. 주요 내용 검토

가. 제안취지와 필요성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및 31개 시·군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청년·청소년 정책사업의 신청부터 접수, 선발,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1) 출처 : 비용추계서(예산정책담당관-2031, 2026. 5. 12.)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온라인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최근 청년·청소년 대상 정책 사업이 다변화됨에 따라 개별 부서 단위의 독자적인 정책 전달 체계로는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단순한 사업 안내를 넘어, 도 및 31개 시·군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신청부터 접수, 선발, 사후관리까지 정책의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행정 인프라의 고도화가 요구됨.
- 이러한 배경에서 상위법령인 「청년기본법」 제24조의5 기조에 맞추어, 경기도 미래세대재단의 사업 범위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 민원사무 처리의 법적 기반을 신설함으로써, 도내 청년과 청소년의 정책 접근성을 높이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구현한다는 점에서 그 입법 취지가 타당함.

「청년기본법」 제24조의5(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국무총리는 청년정책 관련 정보의 효율적 처리, 정보 공유 및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하여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국무총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이를 보유·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무총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중앙센터, 그 밖의 전문기관·단체를 전담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전담 운영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3. 21.]

나. 개별 조문 검토

- 안 제4조(사업)제11호 및 제12호는 ‘청년·청소년 정책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과 이와 관련된 ‘민원사무 처리’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청년·청소년들은 사업 신청 시마다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구비서류를 반복 제출할 필요가 없어지며, 재단은 자격 확인 및 선발 절차를 전산화하여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안 제4조제11호에 따라 수탁기관인 재단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 및 제43조의2를 근거로 도민의 행정정보를 직접 확인·취급하게 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존재함.
- 특히,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청년·청소년 본인은 물론 그 가구원의 소득, 재산, 가족관계 등 ‘고도 민감정보’에 광범위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하는 ‘최소 수집의 원칙’ 및 ‘목적 외 이용·제공 금지 원칙’이 철저히 준수되어야 함.
- 따라서 방대한 양의 민감정보가 처리되는 특성을 고려할 때, 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인 보안 통제 체계가 요구됨. 단순한 시스템 구축을 넘어, 철저한 권한 분리와 상시 모니터링 등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체계를 확립하여 행정 서비스의 안전성을 담보해야 할 것임.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의2(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 ① 정보주체는 행정기관등이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본인에 관한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 등의 행정정보(법원의 재판사무·조정사무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무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이하 “본인정보”라 한다)를 본인이나 본인이 지정하는 자로서 본인정보를 이용하여 업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처리하는 민원은 제외한다)를 처리하려는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제3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행정기관등

2.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② 정보주체가 제1항에 따라 본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때에는 해당 본인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같은 내역의 본인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해당 제공 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정보주체가 제1항에 따라 본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특정하여야 한다.

1. 제공 요구를 받는 행정기관등의 장

2. 제공 요구하는 본인정보

3. 제공 요구에 따라 본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4. 정기적인 제공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요구하는 경우 그 주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라 본인정보의 제공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본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제한 또는 거절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9조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3. 「건축법」 제32조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5. 「관세법」 제116조

6.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7.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의2

8. 「상업등기법」 제21조

9. 「자동차관리법」 제69조

10. 「주민등록법」 제30조

11. 「지방세기본법」 제86조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규정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가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본인정보의 종류를 해당 본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⑥ 행정기관등의 장이 제1항의 제공 요구에 따라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본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⑦ 정보주체가 제1항에 따라 본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이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당 본인정보가 본인에 관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민원인 등의 본인 확인 방법

2.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지문 등의 생체정보를 이용하는 방법

3. 「주민등록법」 제35조제2호, 「도로교통법」 제137조제5항 또는 「여권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신분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하는 방법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본인정보의 요구방법 및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6. 8.]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2. 4., 2023. 3. 14.>

2. 종합 검토 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의 사업 범위에 청년·청소년 정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관련 민원사무 처리를 신설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도민의 구비서류 제출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는 타당함.

- 다만,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수탁기관이 청년·청소년 및 가구의 고도 민감정보를 광범위하게 취급하게 되는 만큼, 시스템 구축 단계부터 철저한 접근 권한 분리 및 상시 모니터링 등 정보 유출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보안 대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임.

자치법규안 검토의견서

자치법규 제명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계 법령	「청년기본법」
검토 의견	<p>○(입법목적 및 법령 등 위배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및 시군에서 추진하는 청년·청소년 지원사업의 신청·접수·선발 및 사후관리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온라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됨. - 개정조례안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인 「청년기본법」 제24조의5의 취지에 부합함. <p>○(재정부담 수반 조례) 안 제4조제11호는 경기도 및 시군의 청년·청소년 정책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규정함. 이는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것으로 조례를 의결하려면 미리 지자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임.</p> <p>○(성별영향평가 지침 위배 여부) 본 조례안은 성별 구분이나 고정관념과 관련한 표현이 없고, 성별 차이 등 차별 조항이 없어 성별영향평가 지침을 위반하지 않음.</p>
검 토 기 간	2026년 5월 6일~
검토 담당자	행정6급 유승규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의 검토의견을 보내드립니다.

2026년 5월 26일

경기도의회사무처 의정국 법제과

의정지원과 귀중